

사회복지 주간 동향(24.1.2.~1.5.)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 즉시 돕는
‘긴급 SOS 지원’ 효과 톡톡

< 식료품,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마련... 지난 7월부터 운영 >



* 갑작스런 한파로 기온이 푹 떨어졌던 12월 초,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로 김 모(64세)씨가 찾아옴,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질 정도로 야윈 남성은 복지팀 담당자에게 다가와 대뜸 돈 한 푼 없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지 오래니 뭐든 도와달라고 하소연함

- 신갈동 복지 담당자는 그 길로 김 씨와 함께 집으로 감, 집은 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냉기가 돌았고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통신 요금, 건강보험료, 월세 등도 몇 달째 체납된 상태, 문 앞에는 단전 예고 통지서를 비롯해 각종 연체 고지서가 가득했음
 - 일용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몇 달 전 다리를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처음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버텼으나 돈이 다 떨어진 후 김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가족들과도 연이 끊겨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음, 김 씨는 겨우 용기를 내 신갈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음
- 신갈동 복지팀은 즉시 김 씨의 밀린 가스요금부터 해결하고 13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서 김 씨에게 전달함, 이 비용은 신갈동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특화사업 ‘긴급 SOS 지원’을 통해 마련함
 - 이렇게 급한 불을 끈 복지팀은 김 씨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을 도움, 김 씨는 현재 아픈 다리를 치료받으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은 지난 7월 시작한 ‘긴급 SOS 지원’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힘,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돕는데 쓸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 요긴하게 쓰임, 이 기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갈동 예치금을 활용, 동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 당장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전처럼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지원하려면 최소 1~2일이 걸려 당일 병원 외래 진료비, 생필품 구입 등과 같은 시급한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 지난 11월 초에는 유 모(72세)씨가 ‘긴급 SOS 지원’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고 함
 - 유 씨는 시각장애가 있는 데다 최근 심근경색 수술을 받아 혼자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고, 수술 후 검사와 각종 처치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을 갈 수 없었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도 없어 유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도 없었음,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노인맞춤돌봄 등의 재가노인 서비스는 관외 지역 병원에는 동행 지원이 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음
 - 사정을 알게 된 신갈동 복지팀 담당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유 씨를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서 유 씨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타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각종 검사와 치료를 무사히 받았고,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은 ‘긴급 SOS 지원’ 으로 해결함
 - 신갈동은 올해 ‘긴급 SOS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배정함, 이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에 들지 못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 사업비는 병원비, 각종 공과금, 식료품 구입, 위기 의심 가구 개문 비용 등으로 쓰임, 동은 내년에 사업비를 300만원으로 늘리고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

- 동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지만 최소 1~2일이 걸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긴급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데 착안해 이 특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보루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함
- 류상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신갈동은 다가구주택, 고시원, 매입임대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어려운 이웃도 많은데 이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도 이런 이웃들이 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신갈동 행정복지센터)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 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
< 정부 차원 첫 개입, 21,360명 정책대상자 발굴, 1,903명 즉시 지원 >



- *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수)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함
 -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명) : (‘16)24.9만 → (‘22.7월)36만 → (‘23.7월)40.2만(통계청)
 - 우울·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 ‘없음’ 비율(%): (‘19) 21.8 → (‘21) 30.6 → (‘23) 31.6(통계청)
- *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옴
 - 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이하 ‘심층조사’라 함)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함, 본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 4대 주요 과제

1.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가 구축
-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24.下~)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24.下~)
- 도움 요청은 '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
-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남,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
-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와 병행하여 고립·은둔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24.~, 6개 시도 10명)

2.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가 설치
-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24년 약 13억 원, 총 32명 전담인력)을 실시할 예정으로,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형을 개발하여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
-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

- 읍면동,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이용권(바우처) 지급,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총 10회)
-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23년 시작, 현재 51개 시군구 실시 중, 23년 196억 원 → 24년 335억 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총 36명)이며,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 보건복지부,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

3.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
 -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
 -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24년 10개 지자체, 224억 원)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23년 408억 원/8천 명 → '24년 425억 원/9천 명)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
 - 아울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CEO 등에게는 MZ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 소통·협업 등 교육 제공)을 신설('24년 44억 원)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23년 5개소 → '24년 9개소)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

4.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함
 -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 >

< 부진기관 4,289개소 중 어린이집 3,734개소로 가장 많아 >

< 보건복지부, 연속 부진기관 포함 시 기관명단 언론 공표 추진 >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방청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9,795개소가 포함,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2022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소(8.6%)*로 전년 3,770개소(7.2%) 대비 1.4% 증가,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음,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의 일부 소속기관 19개소 및 16개 학교, 1,3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아 향후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 * 부진기관(4,289개소) : 어린이집 3,734개소, 유치원 371개소, 각급 학교 113개소, 국가기관 34개소, 공공기관 16개소, 지자체 14개소, 지방공사 및 공단 7개소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 불편은 최소화

< 시스템 작업 일정 및 기초생활 등 수급자증명서 발급 안내 >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금) 19시부터 2024년 1월4일(목) 08시까지,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4년도 연도전환 일정 안내》

- 작업 기간 : '23. 12. 29.(금) 19시 ~ '24. 1. 4.(목) 08시 (근무일기준 2일)
 -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 다만, 연도전환 작업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 ①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 ②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 보건복지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사회보장정보원)과 매주 점검회의 및 3차례 사전 모의훈련 등을 실시
 - 이번 작업으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
 -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60개 기초지자체 대상 경로당 무상 안전점검

-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구축 >
- < 노인 경륜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4년부터 노인일자리 점검원 본격 투입 >
- < 경로당 시설 등의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병행 추진 >

-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 6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2024년에 총 4백 명의 노인 일자리 시니어 점검인력을 양성(34억 원, 국비 50%)하여 경로당 2.4만 건 이상의 안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스마트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통해 채용·육성(월 76만 원 지급, 건강·고용·산재보험 지원))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17일 체결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10.17., 체결)의 후속조치로, 집중지원 지자체를 선정하여 경로당 안전점검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그간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점검제도를 정비하고 ▲은퇴한 기술인을 점검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개발 ▲손쉬운 점검을 위한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개발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를 통해 2024년부터 안전점검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화 우려가 큰 경로당 시설(4.6만 개)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24년(시니어 4백 명, 2.4만 건 점검) → '25년(6백 명, 3.6만 건) → '26년(8백 명, 4.8만 건) → '27년(1천 명, 6만 건)
- 이번에 선정된 집중지원 지자체의 경로당은 무상으로 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그 점검한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플랫폼(SFMS)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받음
 - 또한, 이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정밀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보강 비용도 우선 지원받게 됨
- 양 기관은 2024년은 국민 생활시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원년으로 하여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도 3천 개 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줍니다.**

< 부모, 사업주, 국민 상호 존중을 통한 양육친화환경 조성 캠페인 전개 >
< 보건복지부, 노 키즈 존 운영 실태 및 인식조사 발표 >

- * 보건복지부는 27일(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밝힘
-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 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점*과 제20회 아동총회에서 아동대표 100명이 모여 채택한 결의문의 첫째 조항으로 “아동을 차별하는 노 키즈 존 철폐”를 결의한 것을 계기로, 노 키즈 존에 관한 실태 및 인식,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시
-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 키즈 존 사업장 558개 중 현재 노 키즈 존을 운영 중이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함
 - 실태파악 및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 조사대상의 협조에 의한 조사(행정조사 기본법 제20조) 형태로 수행했으며, 조사에서 확보한 558개 사업장 중 현재 노 키즈 존 운영이 확인된 340개 사업장에서 205개 사업장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 수행
- 노 키즈 존 사업장 업종은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노 키즈 존의 주된 운영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 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로 나타남(1+2순위 응답 합계)
 - 노 키즈 존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나 혜택으로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배상책임보험 지원,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와 사업주 대상 심층집단면접(FGI)도 수행함, 부모들은 노 키즈 존에 대한 견해로 모든 아이를 출입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예절없이 행동하는 부모나 아이를 본 적이 있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찾아간 식당에 출입하려는데 노 키즈 존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당황스럽고 아이에 미안한” 경험과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 “부모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등이 제시

- 노 키즈 존에 대한 관리 방향으로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 인센티브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양육친화 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전달
 - 부모의 경우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하기,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동 짚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도록 하는 행동양식을 담음
 - 사업주의 경우 아이를 포함한 다양한 손님 방문을 환대하고,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안내 표시를 해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는 등의 아이 친화적 행동을 권장
 - 다른 고객의 경우 아이 동반 가족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이가 예절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소 서투른 모습을 보여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며, 아이가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공공예절을 먼저 지키는 행동을 당부하고자 함

[공공장소 내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행위자별 행동양식]

(1) 아이·부모님	(2) 사장님·직원	(3) 다른 손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은 아이에게 외출 전 지켜야할 공공예절 설명 해주기 · 아이가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기 · 아이가 다른 사람에 실수 했으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 아이 등 다양한 손님의 방문을 환영해주기 · 아이들이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위험 등 안내 표시해 주기 · 아이와 아이 동반손님의 도움 신호에 귀를 기울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기 · 아이들의 아이다운 모습이나 실수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먼저 공공예절을 준수하기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

<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바탕, 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 >
< 전국 4.2만 명 추계, 평균 연령 76세, 폐지 수입 월 15.9만 원 >

- *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목)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연구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23.6월~12월))
- 조사는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

① 폐지수집 활동 일반 현황

-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많음, 그리고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9만 원을 벌고 동 활동을 통한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의 13% 수준인 것으로 확인
- 폐지수집 노인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며, ‘시작 동기’는 ‘타 직종 구직 곤란’ 38.9%, ‘현금 선호’ 29.7%, ‘자유로운 활동’ 16.1% 순
- 또한, 향후에도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비중이 높음
- 폐지수집 노인들의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이 8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폐지수집 경쟁 심화’ 51%, ‘날씨’ 23% 순이었고,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 ‘식료품 지원’ 36.9%, ‘생활 용품’ 26.9%, ‘일자리 지원’ 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2.6% 순으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② 폐지수집 노인의 경제 상태

-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2만 원, 가구 소득은 113.5만 원으로 조사되어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8만 원과 가구 소득 252.2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
-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은 93.2%가 수급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24.9%,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12.7%로 나타남
- 폐지수집 노인의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수집 활동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나 총 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활동 수입의 비중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③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 폐지수집 노인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7%로 조사되어 전체 노인이 응답한 ‘건강함’ 56.9%, ‘건강하지 않음’ 14.7%에 비해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스스로 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폐지수집 노인 중 '우울 증상' 보유 비율은 39.4%로 전체 노인 13.5%에 비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건강 검진 수검율과 치매 검진 수검율은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④ 폐지수집 노인의 근로 경험

-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이며, 이들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
-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 환경 불만족' 13.6% 등
-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이고, 노인 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
- 노인일자리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이 익숙해서' 37.9%, '즉시 현금 수입' 14.8%, '혼자 일하기 선호' 12.6%로 나타남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원대책

① 관리체계 구축

-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에 공유하고, 시군구는 고물상을 방문하여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
-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행복e음에 입력하여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②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 폐지수집 노인은 2024년 103만 개로 올해 대비 14.7만 개 확대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하여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함,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으로 연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상담 및 참여 신청을 지원함
- 시군구는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연계를 실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하여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하여 29만 원까지 수당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하여 폐지수집 활동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활동(월 76만 원)을 지원하며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

-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가칭)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하여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 현재 운영 중인 폐지수집 활동 유사 시장형 사업단에 약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단을 확대할 계획
-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여 계속 폐지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보장을 강화할 계획

③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폐지수집 노인에 연계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청 또는 누락된 제도를 추가로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 제도에서 누락 된 경우, 신청하여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긴급지원제도 등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 또한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 하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 그리고 가구원 중 우울증·치매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시군구 희망 복지 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여 개별적인 보건·복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7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등 지원 확대 >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종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등 규제 합리화 >

-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금)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지침 개정은 2024년 보육료 지원 인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복지부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11월부터 12월까지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의견을 듣고 논의한 바 있음
- * 개정된 「2024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1.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5% 인상
 - 0~2세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1.4만 원에서 월 54만 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9.9만 원에서 월 62.9만 원으로 인상
 - 장애아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5.9만 원에서 월 58.7만 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5.3만 원에서 월 68.6만 원으로 인상
 2.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
 -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 인센티브 시행
 - 기존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였으나,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
 - *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토요일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수당(일 5.8만 원)이 지급
 -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인건비(80%)를,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 또는 ‘현원 5~17인 + 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하고 있었으나, 원아 감소는 능어촌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 ‘현원 11인 이상(단일 기준)’이면 지원하도록 완화

3.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추가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기존에는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기간을 최대 60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최대 90일까지 출석인정 기간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그동안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인가증 내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과정이 개편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은 해당 직위·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16년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된 바 없어, 현장에서는 보육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어 옴
 - 이번 보수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개정사항과 안전·감염병 등 최신이슈를 반영하고, 실무중심 위주의 교과목을 강화함
 - 발달지연 및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 및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과목을 신설하고,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부모상담기법과 갈등조정사례 내용을 교과목에 편성하는 등 보육교사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

※ 보도자료 참조(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8 증양정부 복지현안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힘,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 공적연금 9.6% ↑)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음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음,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 접수
-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예를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됨,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도자료 참조(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9 중앙정부 복지현안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 “이제 마음이 힘들 때 '109'로 전화주세요” >

< 문자로 대화하는 SNS 상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제공 >

-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 한 명의 생명도, ㉡ 자살 zero, ㉢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음
 -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옴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함,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1월 1일부터 상담번호(109)를 개통
 -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돌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자살예방 기능을 수행, (109)운영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재 80명인 전화 상담사를 100명으로 증원하고, 하반기부터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제공할 예정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10

중앙정부 복지현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2) >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담아 >

<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월 2일(화)에 공포
- * 지난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됨.
- *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 첫째,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2 신설)
 -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
 -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은 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제공인력과 이용자 에게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외 이자 가산의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 의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이 외에도, 부정 수급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
 -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 개정사항 중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는 개정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과)

11 중앙정부 복지현안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21만 3천 원 오른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
-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힘,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남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62만3천원	103만7천원	133만원	162만1천원	189만9천원	216만8천원
'24년	71만3천원	117만8천원	150만9천원	183만4천원	214만3천원	243만8천원
증가액	+9만원	+14만1천원	+17만9천원	+21만3천원	+24만4천원	+27만원
증가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

-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인상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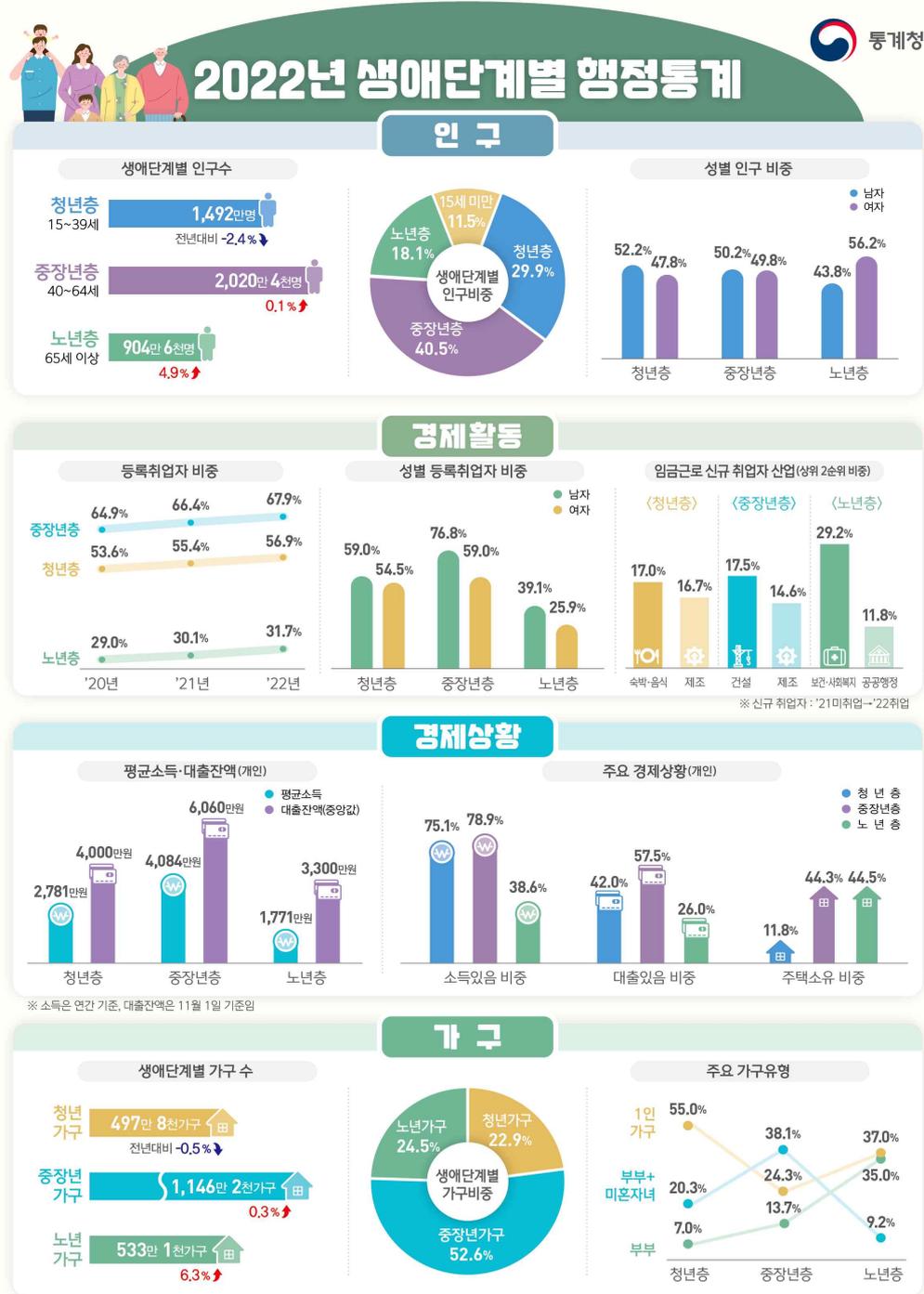
-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
-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힘
-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함

※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결과



* 자료 : 통계청 자료(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